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420
----------	-------

발의연월일 : 2026. 3. 12.

발 의 자 : 김선민 · 신장식 · 백선희
차규근 · 서왕진 · 강경숙
정춘생 · 이해민 · 황운하
김재원 · 김준형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청소년의 경우 2011년부터 최근까지 자살이 사망원인 중 연속적으로 1위를 차지하여 청소년 자살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음. 청소년의 자살예방을 위해서는 자살을 유발하거나 돕는 정보 또는 물건 등의 유통을 제한하여 청소년의 접근을 차단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온라인을 통한 자살유발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규정은 있으나, 청소년을 상대로 한 자살위해물건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어 청소년이 자살위해물건을 쉽게 구입하여 자살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청소년에게 온라인으로 자살위해물건을 판매·대여·배포하는 것을 금지하고, 온라인으로 자살위해물건을 판매·대여·배포하는 자

에게는 구매자 등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본인 인증 등의 조치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6, 제25조 및 제26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에 제19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6(자살위해물건의 청소년 대상 온라인 판매 제한)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청소년(「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5조에서 같다)에게 자살위해물건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실험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살위해물건을 판매·대여·배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인증 등을 통하여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조제3항 중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살유발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한 사람은”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살유발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한 사람

2. 제19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자살위해물건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으로 제공한 자

제26조제1항 중 “제12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파기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2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파기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여 유통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신 설>

④ (생 략)

제26조(과태료) ① 제12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파기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신 설>

②·③ (생 략)

-----.

1.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살유발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한 사람

2. 제19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자살위해물건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으로 제공한 자

④ (현행과 같음)

제2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 제12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파기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②·③ (현행과 같음)